

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도관리 시행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¹, 연세대학교 방사선의과학연구소²

정해조^{1,2} · 김희중^{1,2} · 김기환^{1,2}

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(제정 2002.1.19 법률 제6620호)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, 제 14조(특수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)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“특수의료장비”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·운영하여야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.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(제정 2003.1.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)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·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,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.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.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,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, 나.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년마다, 정밀검사는 3년마다 받도록 함, 다.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, 보건복지부 또는 시·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, 라. 특수의료장비를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·비치·보존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이다.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며,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.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, 팬텀영상검사,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 한다.